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21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김영진 · 채현일 · 이연희
백혜련 · 김남준 · 신정훈
노종면 · 김 윤 · 이해식
차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연간 500만원,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연간 350만원을 한도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00만원”을 각각 “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800만원”을 각각 “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를 ““1천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700만원”을 각각 “350만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1천만원
2.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 700만원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 2. (생략)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

1. 2. (현행과 같음)

④ -----

-----제5항에 따른 금액-----
-----제5항에 따른 금액-----

-----.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1천만원

2.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 700만원

⑥ -----

-----“1천만원”을 각각

00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500만원”으로, “700만원”을 각각 “350만원”으로 한다.

⑦ -----제6항-----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항-----

-----제7항-----

-----.

1.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